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안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창원경륜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단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 및 시설(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공단의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뜻)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란 공단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5. “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하는 시설물 및 그 밖의 공단 소유물을 말한다.

6. “안전보건근로협의체(이하”협의체”라고 한다)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에 따라 공단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8.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정한 상태나 불안정한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9. “보건관리“란 직원의 건강유지·증진 및 사무실 환경 개선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10. “안전전담부서”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공공기관 지침”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한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로서 이사장 직속으로 설치 및 운영되는 부서를 말한다.

11. “안전작업허가”란 각 부서에서 시설공사, 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해당 담당부서장이 승인하는 제도로 시설공사 허가,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허가, 정전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등이 있다.

12. “안전기본계획”이란 공공기관 지침 제6조에 따라 “안전전담부서”에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을 말한다.

13.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직원 및 공단 시설 이용 국민의 상해 또는 건강상 장애 등의 인적 손실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말한다.

14. “재난”이란 고객 및 직원의 생명·신체·재산과 공단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15.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준수 의무)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공단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
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상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직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② 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업부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단직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6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사업부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부서와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공단이 설치한 위생 시설 이용의 협조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7조(안전보건관리조직) ①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운영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조직 및 직책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사장으로 하고 다음의 업무를 총괄관리 하도록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직속으로 안전전담부서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하며 안전전담부서에 법 시행령 제14조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팀장 (또는 담당) 및 지점장으로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선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자) ① 공단은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를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2. 해당 사업장의 안전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
3.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제12조(보건관리자) ① 공단은 보건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를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2. 해당 사업장의 보건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
3.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4. 기타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③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법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25조에 따른다.

제14조(안전경영위원회) ① 이사장은 공공기관 지침 제11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직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경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5조(안전보건교육) ① 안전전담부서는 안전보건교육의 의무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등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② 기타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항은 법 제29조 및 법 제32조에 따르고 대상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다.

제16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4조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소속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11의2의 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기록·보존) 안전관리자는 직원의 안전보건교육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별지 1]의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18조(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① 안전전담부서는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공단의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안전기본계획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③ 확정된 안전기본계획을 토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직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보관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위험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20조(작업중지요청) ① 직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안전 전담부서에 직접 일시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 전담부서는 즉시 요청사항을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공단 안전 전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 전담부서는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중지된 작업의 재개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2]의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⑤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직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2조(시설물 안전점검) ① 이사장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시설공사, 정비·보수 등 작업장 내 추락, 화재·폭발, 질식, 감전 등의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작업 등을 작업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3] 안전작업 허가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자의 승인 및 안전 전담부서의 확인을 거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4조(교통재해 예방)** ① 직원은 공단이 소관하는 시설 안에서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해야 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단이 소관하는 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교통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표시해야 한다.
- ③ 직원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 ④ 관리감독자는 직원이 휴식시간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단,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연장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 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에는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관리감독자는 직원이 제4항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운송수단(고속철도 및 현지 차량임대 등)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공단의 집단 교육 및 행사 등으로 인해 직원이 대형버스에 20인 이상 탑승하고 1일 8시간 이상 이동 시 관리감독자는 운전자를 2인 이상 배치하여 교대로 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고객의 폭언 등 예방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고객응대매뉴얼 전파교육 실시

② 관리감독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및 휴게시간의 연장
2.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3.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26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직원이 있는 해당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및 측정 방법 등은 법 제125조에 따른다.

제27조(직원 건강진단) ①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복리후생규정」에 따른다.

② 직원은 공단이 제공하는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강진단 방법 등은 법 제129조에 따른다.

제28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104조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직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직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관리감독자에게 착용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직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직원과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 상 작업 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 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직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 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 재난 또는 중대사고 발생 사업장의 사고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업무 트라우마 등 건강장해 발생 시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폭염, 한랭,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직원의 건강장해 예방을 해야 한다.

제32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이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33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 수급인 근로자 및 공단 시설 이용 국민의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전담부서에 [별지4]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 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 해당 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⑥ 사고조사 시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서 지정한 조합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직원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4조(중대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안전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중대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를 주관하며 필요시 관련분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재해

5.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6. 본장 및 지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지진, 태풍, 소요사태 등에 의한 사업 중단과 같은 중대한 사고

7. 진행 중인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사고조사는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관련 관리감독자는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제1항의 1호 내지 3호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안전전담부서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관리감독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안전전담부서는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35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이사장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② 공단이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7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8장 재난관리

제38조(재난관리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 ① 공단의 재난관리업무 담당부서는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모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

안전관리 총괄부서'와 소관시설물 및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재난관리 소관 부서'로 구분하여 각 역할을 수행한다.

② 재난관리 총괄부서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재난관리 소관 부서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소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거나 소관업무와 관련한 재난사고예방의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9조(총괄부서장 및 소관부서장의 임무) ①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의 총괄
3. 기타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총괄·조정

②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재난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실시
3. 기타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처리

제40조(재난상황의 보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소관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현장사고수습본부·현장지휘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공단은 재난 발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현장사고수습본부 또는 현장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사고수습본부(현장지휘본부)는 대응·복구업무 분담을 위하여 실무 조직을 편성할 수 있다.

제42조(재난예방 조치) 공단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3.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4.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① 공단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자 및 자재를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재난관리자원 비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44조(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공단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제45조(응급조치) 공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부상자 응급조치 및 구호
2.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 그 밖의 질서 유지
3.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4.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6조(피해조사) 재난관리 총괄부서장 및 소관부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공단은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48조(안전보건 제안제도) ① 이사장은 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전담부서는 공단 제안제도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여야 한다.

제49조(상벌) ① 안전전담부서의 장은 안전보건업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직원, 업체 등에 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포상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안전사고의 원인이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한 경우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문서보존연한)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협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제1항의 서류가 전산입력자료일 경우 전산입력자료로 보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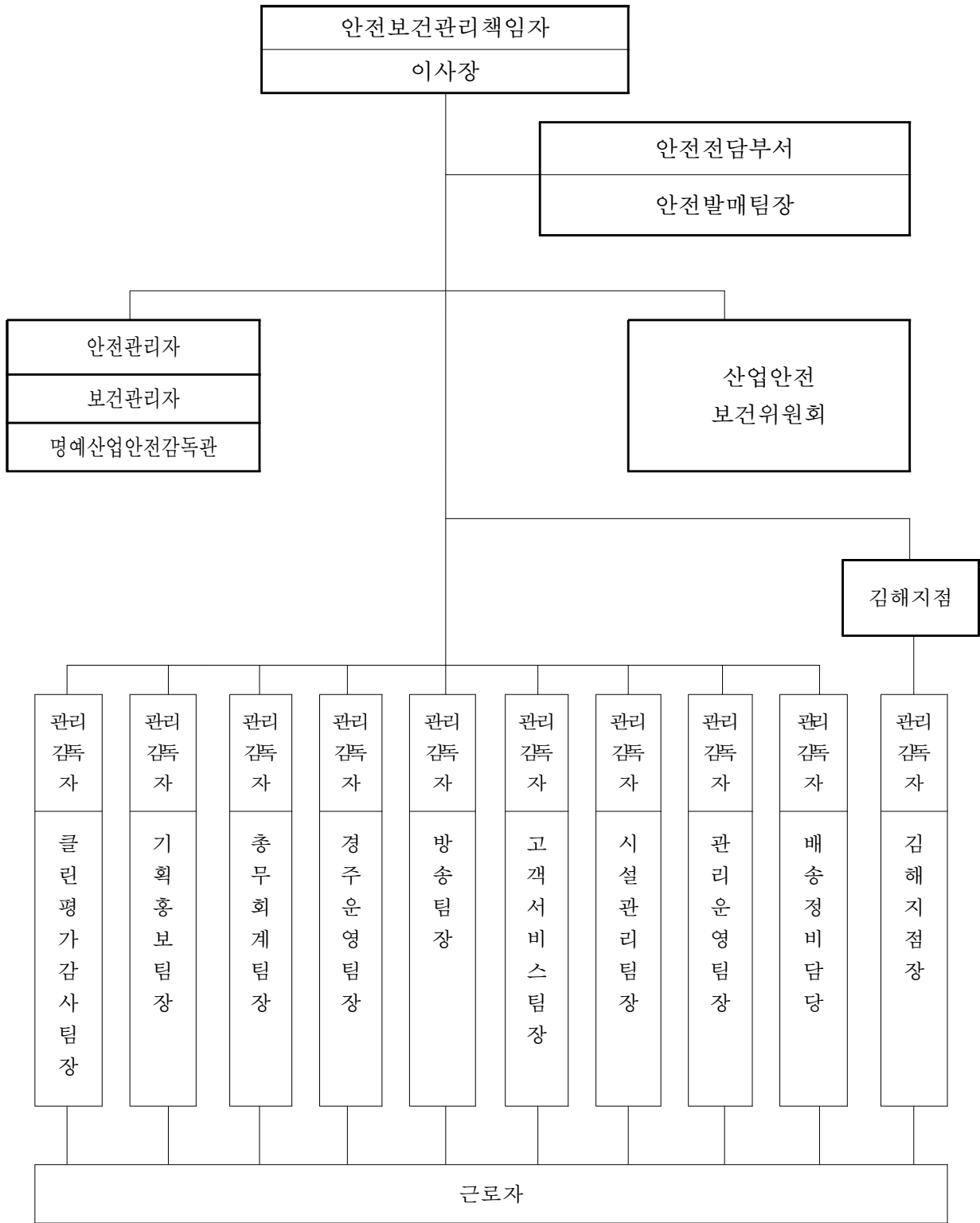
제51조(준수) ①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조직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 교육일지

20 년 월 안전보건교육일지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작성일자 : . .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관련)	정기교육(✓)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특별안전교육()
	사무직	사무직외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이상	· 별표8의2 제1호 라목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이상 · 별표8의2 제1호 라목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최초작업종사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내 분할실시) · 단기간,간헐작업: 2시간이상
	매분기 3시간이상	-판매업무에직접 종사하는근로자: 매분기 3시간이상 -판매업무에직접 종사는근로자외: 매분기 6시간이상 -관리감독자 직위 에있는사람: 연간 16시간이상			
	※ 전년도 무재해시 50/100 이상만 실시				
교육 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위	교육실시 장소		교육시간

안전작업허가서

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전담부서

1. 발급일자	년	월	일		
2. 허가일자	년	월	일		
3. 작업허가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시까지
4. 작업장소 및 설비					
5. 작업내용					
6. 허가사항	<input type="checkbox"/> 떨어짐 위험작업 <input type="checkbox"/> 화재위험작업 <input type="checkbox"/> 폭발위험작업 <input type="checkbox"/> 질식위험작업 <input type="checkbox"/> 감전위험작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넘어짐등 위험작업				
7. 안전조치 요구사항	안전조치 확인				
* 필요한 부분에 √ 표시	감독자 :		(서명)		
	입회자 :		(서명)		
(예시)	조치/확인		조치/확인		
· 위험구역설정 (출입금지 표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전기차단 및 표지부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통행 및 차량 등의 출입제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환기장비 설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가스측정(가연성/독성/산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조명장비 설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밸브차단(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안전장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특별안전교육 (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소화기 비치(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기타 특별 사항	9. 첨부 서류		· 차단밸브 및 맹판설치 위치표시 도면 <input type="checkbox"/> · 소요안전장구 목록 <input type="checkbox"/> · 소화기 목록 <input type="checkbox"/> · 특수작업 절차서 <input type="checkbox"/>		
10. 가스 점검	가스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기기명 :	
				담당자 : (서명)	
				관리감독자 : (서명)	
11. 작업완료확인					
완료시간 :					
담당자 :			(서명)		
관리감독자 :			(서명)		

[별지4호 서식] 사고보고서

사 고 보 고 서

수 신		접수일시	
시행일시		발 신	
제 목			
1. 일 시 :			
2. 장 소 :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사항 ○ 인명피해 : 명(사망 , 부상) ※별첨 : 사망·부상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 기타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력 및 장비			
6. 향후전망 및 대책			
7. 기타 참고사항			